

제안번호	제 67 호
의결년월일	1996. . . . (제 회)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출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4. 4 .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 '96. 4. 4

제 출 자 : 서산시장

제안이유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및 시설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시설사용허가의 제한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료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료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요율과 초과사용료 및 병난방 사용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사용료료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 마.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료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료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고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료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제 12조)
- 사. 도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3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 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복사료
4. 장기간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5. 입관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강당, 연구실,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문화교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2. “도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전시촬영(축화), 기타 일체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도서관의 사용범위는 강당, 연구실,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 문화교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사용자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직접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 사용정지료 2회 이상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기타 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료) ①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사용료는 히가시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는 당해 기본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서관의 냉·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1회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⑤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준 사용료 (냉·난방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9조(히가의 취소 등) 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히가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채납하였을 때
4.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폐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폐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판장은 책임을 지지아니하며 철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폐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판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제한) 도서관의 사용허가권을 받은 자는 판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기타 판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사용 중단신고) 도서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산시시립도서관시설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물	사용 기준	평 일			토 · 일요일		
		행 사	영 화	공 연	행 사	영 화	공 연
강 당	오 전 08:00~12:00	20,000	20,000	20,000	30,000	25,000	25,000
	오 후 13:00~17:00	30,000	30,000	30,000	40,000	35,000	35,000
	야 간 18:00~21:00	30,000	30,000	30,000	40,000	35,000	35,000
연 구 실	1 입	1,500			2,000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문화교실	1 회 (3시간)	20,000			30,000		

나.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강 당	1 회	25,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 문화 교실	1 회	10,000	

다. 부속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 회	20,000	오전,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대관할 때 는 제외
영 사 기	1 회	20,000	
환 등 기	1 회	10,000	
조 명	1 회	20,000	
음 향	마이크 1개	1,000	3개이상 사용시에 한함
	무선마이크1개	2,000	
	녹음기 1회	2,000	
	녹음료 1회	3,000	

라.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영 화 촬 영	1 회	10,000	시설사용허가료 받은자가 부담
T.V 녹화료	"	10,000	"
T.V 증계료	"	10,000	"
라디오 증계료	"	10,000	"
아취 설치료	1 건	10,000	"
현관및 현수막 설치료	1 매	5,000	"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시 간 : 부터 까지 (사용회수 : 일 회)
연습시간 :
5. 사용료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비 고

6. 허가기준 : 이번 허가조건 참조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서산시시립도서관장

-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료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 허가목적과 내용이 다를 때, 기타 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시설사용 당일 대관이 없을 시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시설비 사용료(냉·난방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사용은 시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공연 및 영화를 상영코자 할 때에는 공연 5일 전에 영화검열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현판제작은 사전 협의하여 규격 및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상 부주의로 시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1996. 4. 15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4. 4
- 나. 제출자 : 서산시장
- 다. 회부일자 : 1996. 4. 8
- 라. 상정일자 : 1996. 4. 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서관장 이강주)

가. 제안이유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및 시설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시설사용허가의 제한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다. 도서관시설 사용료의 요율과 초과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고,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사. 도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 및 독서진흥법과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용료 징수등 도서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